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19호, '22.5.12.)

2.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① 용어의 정의 수정

-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임을 명확화(제2조제2호)
-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통관목록' 정의와 일치

②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회의회의(22.10.5) 심의(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 제36조제4항(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40조제2항(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호)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③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 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간담회('22.11월) 시 수출업계 건의사항

④ 기타

-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별표 10)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4.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23년 1월중

* 제40조제2항 개정내용, 별표 12,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6호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통보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23년)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당자
 -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사무관(☎042-481-7825)
서병일 관세행정관(☎042-481-7802)
 - 전자상거래통관과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김가영 관세행정관(☎042-481-7843)
- 제출기한 : 2023. 1. 9(월)
- 제출방법 : 이메일(kbrains@korea.kr, kwono@korea.kr)
팩스(042-481-7819)